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1. 6 선고 2024나110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1. 6 선고 2024나1108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가단26186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송대준

변론 종결 2024. 9. 4.

판결 선고 2024. 11. 6.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2가단26186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240,034,6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4. 30.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40,034,6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240,034,6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예비적으로, 피고 B와 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1. 4. 30.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40,034,6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는 피고 C에 제1심판결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기우종

판사이형원

판사신옥영

별지